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70호
- 나.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 다. 발의일자 : 2016. 3. 14.
- 라. 회부일자 : 2016. 3. 15.

II. 제안이유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함으로써 서울교육 주요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유사·중복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3. 21 ~ 2016. 3. 28).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4일 김창수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070호로 발의되어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유사·중복 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22개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3년~ 2016년 까지 최근 4년간 각 자문위원회별 회의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자문위원회도 7곳이나 되는 등 명목상의 위원회로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별표 1 참조).
- 예컨대 혁신학교 자문위원회 및 영재교육 자문위원회, 체육수련교육 자문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의 경우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¹⁾ 자문위원회의 별도 역할과 기능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및 수업·평가·연수 혁신자문위원회의 경우도 사업별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어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표1] 미운영 자문위원회와 그 사유

위원회 명	미운영 사유	교육청 담당 부서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혁신학교조례'에 의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와 중복	교육혁신과
영재교육 자문위원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중복	교육혁신과
체육수련교육 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에 의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와 중복	체육건강과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와 중복	체육건강과
학교비정규직 정책자문위원회	교육공무직 노조와 정기적인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있고, 인사노무 제도가 정비된 상태로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예산담당과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자치활동과 학교폭력 근절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학교폭력 근절은 내용별로 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여 상황에 따른 TF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학생생활교육과
수업·평가·연수 혁신자문위원회	수업·평가·연수 등 분야별 현장 및 외부 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 실시.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립 시 전문가 TF 구성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 27 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 임금협약 체결) 참고.

○ 따라서 자문위원회제도의 도입 취지 및 각 위원회별 법령체계 그리고 교육행정영역의 실효성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도 지난 2015년 9월 10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²⁾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미운영되는 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의견없음”을 회신 하였는바³⁾ 조례개정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자치부 2015. 9. 10 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참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2492(2016. 3. 2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교육청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2013년 1월 1일~2016년 3월 1일)

위원회명	위원수	회의 개최 수	회의개최연월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29	5	2013.09.16. 2013.12.17. 2014.03.24. 2015.02.05. 2016.01.27.
학부모지원정책 자문위원회	15	4	2013.03.18. 2013.07.24. 2013.08.21. 2016.01.08.
교육복지정책 자문위원회	15	2	2013.10.23. 2016.02.23.
과학교육 자문위원회	15	2	2013.06.28. 2015.12.16.
환경·생태교육 자문위원회	15	1	2015.12.10.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14	1	2015.11.24.
사교육정책 자문위원회	15	4	2013.08.13. 2013.12.09. 2015.10.14. 2015.12.08.
학습부진대책 자문위원회	15	4	2013.04.25. 2015.11.20. 2015.12.11. 2016.02.24.
외국어교육정책 자문위원회	15	2	2013.06.28. 2015.12.14.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5	3	2015.11.13. 2015.12.07. 2015.12.14.
도서관정책 자문위원회	15	4	2013.08.07. 2013.12.05. 2015.03.12. 2015.09.18.
진로·직업교육 자문위원회	15	2	2013.05.29. 2015.12.28.
사학정책 자문위원회	13	2	2013.10.14. 2013.12.02.
학교신설·이전 자문위원회	15	0	0
교육시설정책 자문위원회	15	0	0
학교비정규직정책 자문위원회	15	0	0
혁신학교정책 자문위원회	15	5	2013.03.30. 2013.04.08. 2013.05.28. 2013.09.30. 2013.10.30.

위원회명	위원수	회의 개최 수	회의개최연월일
영재교육 자문위원회	14	0	0
학생생활지도정책 자문위원회	14	0	0
체육·수련교육 자문위원회	15	0	0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15	1	2013.01.15.
수업·평가·연수혁신 자문위원회	15	0	0